

---

# 2019년 분묘보상액 단가 산정

---

2019. 5.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①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유연분묘 보상액	무연분묘 보상액
분묘이전비 <sup>1)</sup> , 잡비 <sup>2)</sup> 및 이전보조비 <sup>3)</sup> 의 합계액	유연분묘 이전비 및 잡비의 50% 이하

1) (분묘이전비) 4분판 1매, 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레비, 노임 5인분 (합장인 경우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 가산) 및 운구차량비

\* 석물 이전비 및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분묘인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통하여 산정

2) (잡비) 분묘이전비 산정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전보조비) 100만원

### 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합계	분묘이전비①		잡비 (①×30%)	이전보조비	
		분판·마포·전지 ·제레비·노임	운구 차량비			
유연	단장	3,651,020	1,609,250	430,000	611,770	1,000,000
	합장	4,697,030	2,413,870	430,000	853,160	1,000,000
	삼합장	5,533,840	3,057,570	430,000	1,046,270	1,000,000
	사합장	6,161,450	3,540,350	430,000	1,191,100	1,000,000
	오합장	6,579,860	3,862,200	430,000	1,287,660	1,000,000
	육합장	6,789,050	4,023,120	430,000	1,335,940	1,000,000
	아장	2,395,810	643,700	430,000	322,110	1,000,000
무연	단장	1,173,270	804,620	97,900	270,750	-
	합장	1,696,270	1,206,930	97,900	391,440	-
	아장	545,670	321,850	97,900	125,920	-

\* 원단위 절사

### ③ 적용기준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하되, 적용시기는 2019년도 단가 결정일로부터 2020년도 단가 결정 시까지 적용

## 참고1 분묘보상액 단가 증감 내역

(단위: 원)

구분	유연 단장	유연 합장	무연 단장	무연 합장	비고
'17년	3,405,650	4,341,000	1,058,390	1,526,070	
'18년	3,504,450	4,489,200	1,107,790	1,600,170	
'19년	3,651,020	4,697,030	1,173,270	1,696,270	
증감 (전년대비)	146,570	207,830	65,480	96,100	

## 참고2 2019년 지방국토관리청 분묘보상액 집행기준

(단위: 원)

구분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유연 단장	3,610,000	3,437,000	3,310,000	3,415,400	3,651,020
분묘이전비(a)	2,004,500	1,874,708	1,778,000	1,858,000	2,039,250
4분관 1매	10,500	10,500	9,000	10,000	10,750
마포 24미터	252,000	270,000	214,000	241,000	255,000
전지 5권	20,500	22,500	18,000	19,000	20,500
제레비	451,800	400,000	378,000	395,000	476,000
노임 5인분	861,700	801,708	802,000	834,500	847,000
운구차량비	408,000	370,000	357,000	358,500	430,000
잡비(a×0.3)	601,350	562,412	533,400	557,400	611,770
이전보조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무연 단장	1,160,000	1,108,000	1,040,000	1,096,090	1,173,270
유연 대비 비율	50%	50%	50%	50%	50%
운구차량비	96,900	100,000	91,800	93,400	97,900